

의안번호	2202367
의 퇴 인	최수진의원
회 답 일	2024. 8.13.
추 계 번호	24D2414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2호 (정의)	외국대리인을 외국당사자의 대리인 등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당사자의 통제에 따르거나 자금지원을 받아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함 ¹⁾	—
2	안 제3조 (등록 등)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함	의무규정
3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등록의 취소 및 외국대리인 업무의 정지)	외국대리인이 제출서류 중에 중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량규정
4	안 제12조 (조사 등)	법무부장관은 등록, 등록취소 등 이 법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외국대리인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2호(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조(등록 등)	
3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등록의 취소 및 외국대리인 업무의 정지)	
4	안 제12조(조사 등)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당사자”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이 법에서 “단체”는 조합, 협회, 기업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외국대리인”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의 대리인, 대표, 피고용인, 사자(使者) 등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외국당사자의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감독, 통제에 따르거나 자금지원을 받아 정치·경제 활동, 정책 자문, 관련 자료제출, 홍보자문, 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외국당사자와 아무런 의사연락 없이 편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2. 상세 사유

- 외국대리인의 등록 등(안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금품내역 등의 등록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활동한 내역 등의 보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외국대리인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외국대리인 등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유지보수비 및 외국대리인 관리 업무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 시점에서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예산 및 유지보수비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의 구축비와 유지보수비는 다음과 같음

[표 1]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소요비용
시스템 구축예산 (2021.6.~2022.1.)	자체발주	개발비	712
		소프트웨어	288
		기술지원비	64
	위임발주	하드웨어	118
		소프트웨어	42
		기술지원	32
		소계	1,256
	유지보수비 (2023년~)	직접인건비	76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0%)	107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37
		소계(부가세 포함)	242
		적정위탁운영비(242백만원)의 47%	112

자료: 법무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na.go.kr